

기술이전의 종류

- 권리 이전(권리 양도)

권리 이전이란 계약에 의하여 권리를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전되는 권리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권 등 법으로 보호되는 권리

- 실시권 허여(라이센싱)

실시권 허여(License)는 기술에 대한 권리는 보유한 채 기술의 실시 및 사용권을 타인에게 허락하는 형태의 계약

- 기술 전수

소위 노하우의 이전이라고 할 수 있다. 기술 전수는 특정 권리의 이전과 함께 이루어지거나, 권리의 이전 없이 특정 기술을 실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술을 교육하거나 관련 프로그램 또는 기자재를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기술이전의 의의

‘기술이전’이란 연구개발로 취득한 권리 또는 기술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전하거나 실시를 허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기술이전은 권리가전, 라이선싱, 노하우 전수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산학협력단 기술이전 절차

유원대학교 보유 기술의 수요기업 발굴	- 기술보유기관(산학협력단) 업무위탁기관, 중개기관 등을 통한 기수수요기업 탐색/홍보/마케팅 - 기술발명자(연구자)가 직접 기술수요기업 탐색 후 기관의 문의
기술이전 (기술의 실시계약) 추진	1. 연구자상담(발명자-산학협력단) 2. 연구자-기술수요기업-산학협력단 간 논의를 통해 기술상용화 및 기술이전 조건에 대하여 협상 3. 협상내용을 반영한 계약서 작성 및 협의
최종 계약체결 & 기술료입금	1. 계약체결 프로세서 진행 2. 기업은 산학협력단 지정계좌로 기술료 입금함 3. 산학협력단에서 기술료 입금을 확인한 후 후속절차를 진행함
직무발명보상(발명자보상)	산학협력단이 입금받은 기술료 일부를 발명자에게 보상함 - 발명자 보상비율은 산학협력단 기술이전 보상금 지급 지침에 따름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 기술실시계약(기술이전 계약) 체결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심의. 기관 적립금 등 사용 결정
기술이전 후속절차	- 기술이전 대상기술(특허,노하우)의 소유권 이전 및 실시권 등록, 유지 등 후속유지/관리 - 기술이전 학내 시스템 등록 등을 통한 연구업적 입력 - 기술료사용내역 정부보고/ 국가통계 반영